

## IEEPA 상호관세 환급, 전략 싸움 시작됐다

### [워싱턴 통신]

PSC·이의신청·소송... 환급 성패 가르는 대응 전략  
(16p)

### [통상 현안 체크]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13p)

### [이주의 초점]

에너지·관세 '복합 위기' 직면한 ASEAN+3,  
'4% 성장 유지 전망'에도 하방 위험 확대 (4p)

### [위클리 뉴스]

한-UAE CEPA 5월 1일 조기 발효... 에너지·나프타  
공급망 협력

ADB "한국 성장률 1.9%" 단, 중동 갈등 한 달 내  
안정화 전제

한국산 벌꿀제품, 사우디 수출 재개 (8p)

### [관세 행정]

한·미 FTA 제3국에서 보관 후 수입된 제품의 직접운송  
요건 입증 (20p)

### [판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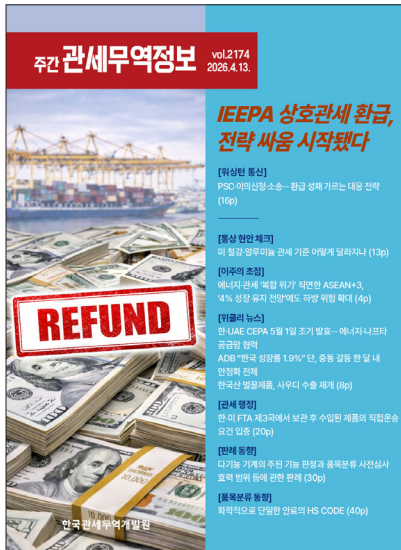
다기능 기계의 주된 기능 판정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효력 범위 등에 관한 판례 (30p)

### [품목분류 동향]

화학적으로 단일한 안료의 HS CODE (40p)



**REFUND**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4월 13일(통권 제2174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홈페이지 [www.kctdi.or.kr](http://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http://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https://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C O N T E N T S

---

## 이주의 초점

- 04** 에너지·관세 '복합 위기' 직면한 ASEAN+3,  
'4% 성장 유지' 전망에도 이중 압박

---

## 08 Weekly News

---

## 통상 현안 체크

- 13**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

## 전문가 칼럼

- 16** 박주현의 워싱턴 통신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DLA Piper LLP(US), Washington DC  
Office 파트너 변호사  
  
끝나지 않은 관세 전쟁  
IEEPA 관세조치 위법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

## 관세행정실무해설

- 20** 관세행정안내  
[한·미 FTA] 제3국에서 보관 후 수입된 제품의  
직접운송 관련 문의  
  
**28** 질의응답사례  
원산지 표시 면제

---

## 판례동향

- 30** 관세판례해설  
다기능 기계의 주된 기능 판정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효력 범위 등에 관한 판례

---

## 품목분류동향

- 40** 세번 바로잡기  
화학적으로 단일한 안료의 HS Code
-

## 에너지·관세 ‘복합 위기’ 직면한 ASEAN+3, ‘4% 성장 유지’ 전망에도 이중 압박

AMRO “회복력 늘었지만, 하방 위험 확대… 정책 시험대 올라”

중동 지역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충격이 확산되면서 ASEAN+3(ASEAN+한국·중국·일본) 경제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높은 유가와 통상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역내 경제는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4월 6일 발표한 ‘ASEAN+3 지역경제전망(AREO) 2026’에 따르면, ASEAN+3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과 2027년 모두 4.0%로 전망됐다. 2025년 성장률 4.3%보다 둔화된 수치로, AMRO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역경제전망은 한국·일본·중국과 ASEAN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안하는 보고서로 AMRO가 매년 발간하고 있다.

AMR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동 허(Dong He)는 “ASEAN+3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상태에서 2026년에 진입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리스크가 더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26년에는 2025년 1.0%에서 반등한 1.9% 성장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 3월 10일 발표된 한국연례협약의보고서 성장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다만, 물가 상승은 2.3%로 연례협약의보고서(1.9%)보다 상향 조정됐다.

### ■ 에너지 충격, 물가·성장 동시에 압박

AMRO는 중동 전쟁이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은 산업 원자재, 물류, 식량 가격, 관광, 송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급되며,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구조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AMRO는 2025년 0.9%였던 ASEAN+3의 물가상승률이 2026년 1.4%, 2027년 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특히 보조금 조정과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유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ASEAN+3의 물가는 추가로 0.8%p 상승하고 성장률은 0.3%p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AMRO는 “에너지 시장 충격이 장기화되면 제조업 원가 상승과 물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2025년 추정치&2026·2027년 예측 ●

(전년 대비 백분율)

| Economies | GDP 성장률 |      |      | 인플레이션 |      |      |
|-----------|---------|------|------|-------|------|------|
|           | 2025    | 2026 | 2027 | 2025  | 2026 | 2027 |
| ASEAN+3   | 4.3     | 4.0  | 4.0  | 0.9   | 1.4  | 1.5  |
| Plus-3    | 4.2     | 3.8  | 3.8  | 0.6   | 1.0  | 1.2  |
| 중국        | 5.0     | 4.5  | 4.5  | 0.0   | 0.6  | 0.9  |
| 홍콩        | 3.5     | 2.8  | 2.7  | 1.4   | 1.9  | 1.6  |
| 일본        | 1.2     | 0.7  | 0.8  | 3.2   | 2.4  | 2.2  |
| 한국        | 1.0     | 1.9  | 1.9  | 2.1   | 2.3  | 2.2  |
| ASEAN     | 4.9     | 4.6  | 4.8  | 2.3   | 3.1  |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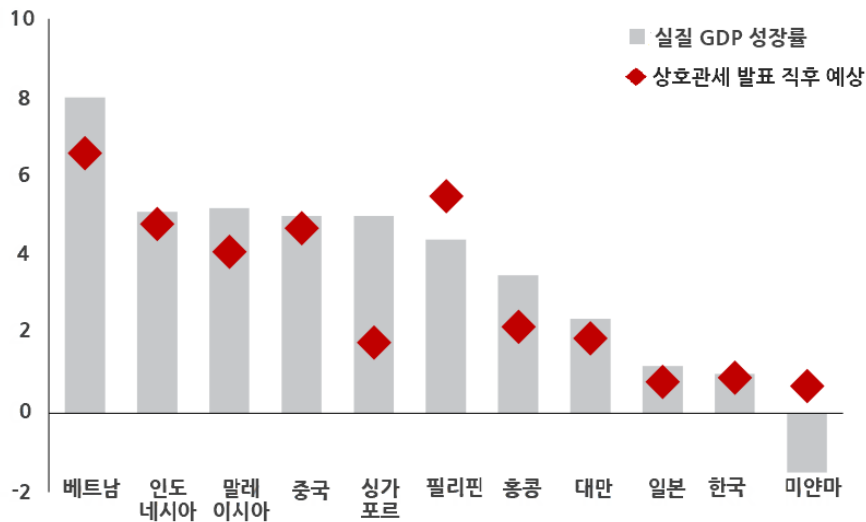
출처: AMRO, 자료: CIEC Data

■ 2025년 ‘예상 밖 선방’ AI와 내수가 버팀목

ASEAN+3 경제는 2025년 글로벌 관세 충격 속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불구하고 역내 경제는 4.3% 성장하며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전망치(3.8%)를 상회했다.

● 4월 상호관세 발표 직후 예상과 실질 GDP 성장률 ●

(전년 대비)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자료: AM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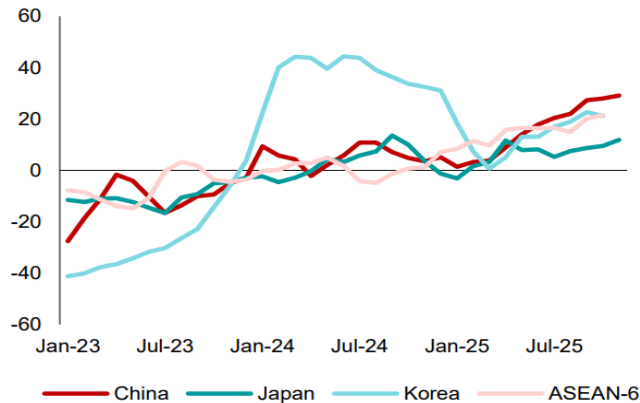
보고서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AI 기반의 반도체 수요에 힘입은 수출 증가, ▲견조한 내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기반 투자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한국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여기에 전기차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출은 전년 대비 30.7% 증가했다.

역내 교역 확대도 주목된다. 대미 수출이 일부 감소했지만 ASEAN+3 내부 교역은 오히려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 상호관세 조치 이후 역내 교역 증가율은 10.6%에 달했다. 이는 중국과 ASEAN 간 교역 확대, 공급망 재편, 지역 내 생산 네트워크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ASEAN+3 반도체 수출 성장 ●

(전년 대비 백분율, 3개월 평균)



ASEAN-6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된다(출처: AMRO, 자료: S&P 글로벌 무역 아틀라스)

## ■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 미국발 관세 리스크 지속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적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ASEAN+3의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여전히 글로벌 무역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됐다.

2025년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10~50% 수준의 고율 관세를 도입했으며, ASEAN+3 국가들은 최대 40%에 달하는 관세 노출에 직면했다. 이후 미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가 인화된 국가도 있었지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발생했다. 미국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관세를 도입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 주요 산업이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급망에 깊이 편입된 ASEAN+3 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4월 2일(현지시간) 미국정부는 특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단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복제약)·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AMRO는 정책 대응의 핵심으로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시적일 경우 완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지만 물가 상승이 확산될 경우 긴축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정책 역시 균형이 중요하다. 보고서에서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광범위한 재정 확대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SEAN+3 국가들의 공공부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점도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이 결합되면서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구조적 변화가 ASEAN+3 회복력 키웠다

다만 ASEAN+3 경제는 과거보다 높은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AMRO는 지난 20년간 역내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외부 수요 의존도가 감소하는 대신 역내 수요 비중이 확대되면서 경제 안정성이 탄탄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ASEAN+3는 현재 글로벌 최종 수요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역내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외환보유액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대외 건전성도 강화됐다. 2025년 기준 외환보유액은 6조 5,000억달러로 확대되며 글로벌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늘었다.

AMRO는 “ASEAN+3는 과거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정책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며, “완전한 면역은 아니지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ASEAN+3 경제는 에너지와 통상이라는 이중 리스크 속에서 성장 둔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중심 구조 전환과 정책 대응 여력, 강화된 역내 연계성을 기반으로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과 정책 선택이 경제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AMRO는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ASEAN 간 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가 지난 8일 화상으로 진행됐다. 한·ASEAN FTA는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UAE CEPA 5월 1일 조기 발효··· 에너지·나프타 공급망 협력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5월 1일 조기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중동 산유국과 체결한 첫 FTA로, 에너지·자원 협력과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4월 3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장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한·UAE CEPA 발효 시점을 5월 1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에너지·자원·디지털·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가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UAE가 한국의 최대 나프타 수입국인 점을 언급하며, 원유와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으로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통관 지원도 당부했다.

양국은 향후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대로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자원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CEPA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전략적 경제동맹의 성격을 갖는 협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 산유국과의 첫 FTA라는 점에서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김성은 기자 |

## 한국산 벌꿀, 사우디 수출 재개··· 수입허용 국가 공식 등재

한국 벌꿀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식의약 규제기관(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의 벌꿀제품 수입허용 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됐다고 9일 전했다. 벌꿀제품에는 벌꿀, 꿀 함유 식품 또는 꿀벌 채집물(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이 포함된다.

사우디정부는 2024년부터 벌꿀제품에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해, 자국 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한 국가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 해 2월 우리 기업의 벌꿀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초 사우디정부는 사우디 규제기관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 고수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시험·검사 및 인증기업 SGS 한국지사는 사우디의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실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SGS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인 'SGS 리야드지사'와 협조해 실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SGS 한국지사'를 통한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실사 비용과 대기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한국지사 인력을 활용해 실사 과정에서의 언어 소통의 불편함도 해소돼 기업의 시설 등록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사우디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수출 중단을 적극 행정으로 극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서준식 기자 |

## 중기부,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27일까지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지난해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약 20개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EU로 CBAM 적용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향후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선정 기업에는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우선, 하드웨어(H/W) 분야에서는 생산설비 및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력량계, 유량계 등 계측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셋째, 검증 분야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전문기관의 검증 및 의견서 작성,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와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http://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준식 기자 |

## ADB "한국 성장률 1.9%" 단, 중동 갈등 한 달 내 안정화 전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한국의 2026년과 2027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정부 지출 확대가 성장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중동 갈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ADB는 4월 10일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하고 한국의 2026년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2%p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2027년 성장률 역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 지연 속에서도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도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ADB는 중동 지역 갈등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목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AI 수요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 변동성 등이 향후 성장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의 경우 2026년 상승률을 2.3%로 전망해 기존보다 0.2%p 상향했다. 2027년 물가상승률은 2.0%로 예상했는데, 이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전자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연료 가격 안정 정책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번 전망은 중동 갈등이 1개월 내 조기 안정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으로, 갈등 장기화나 추경으로 인한 경제 효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경제 흐름은 ADB 전망치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전망부터 ADB는 새로운 국가 분류 체계를 도입해 한국을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함께 '선진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재분류했다.

| 김성은 기자 |

●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전망(2026·2027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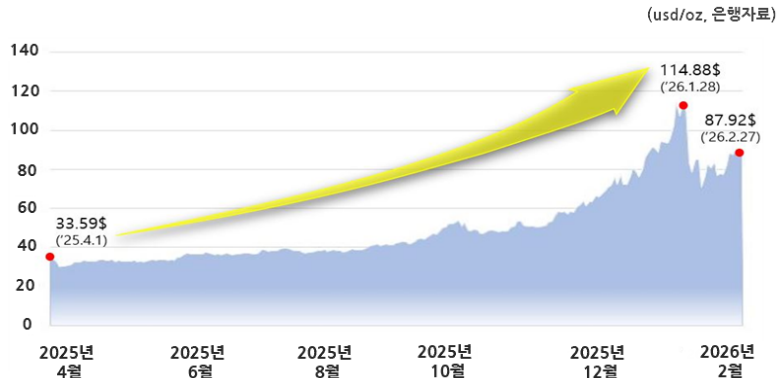
| 구분                                                                                          | GDP 성장률(%) |          |         |      | 물가상승률(%) |          |         |      |
|---------------------------------------------------------------------------------------------|------------|----------|---------|------|----------|----------|---------|------|
|                                                                                             | 2025       | 2026     |         | 2027 | 2025     | 2026     |         | 2027 |
|                                                                                             |            | 2025.12. | 2026.4. |      |          | 2025.12. | 2026.4. |      |
| 한국                                                                                          | 0.9        | 1.7      | 1.9     | 1.9  | 2.1      | 2.1      | 2.3     | 2.0  |
| ※ 한국은 이번 경제전망부터 선진아태국(AAP)으로 분류, 한국을 제외한 선진아태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경제 전망치는 4.10. 국제 엠바고와 함께 입수 예정 |            |          |         |      |          |          |         |      |
| 개발도상아태국(DAP)                                                                                | 5.4        | 4.6      | 5.1     | 5.1  | 3.0      | 2.1      | 3.6     | 3.4  |
| 중아시아                                                                                        | 4.6        | 5.0      | 4.2     | 4.4  | 25.6     | 7.1      | 20.6    | 16.3 |
| 카자흐스탄                                                                                       | 6.5        | 4.5      | 4.8     | 4.5  | 11.4     | 9.5      | 10.4    | 9.5  |
| 동아시아                                                                                        | 5.0        | 4.1      | 4.6     | 4.5  | 0        | 0.6      | 0.6     | 1.0  |
| 중국                                                                                          | 5.0        | 4.3      | 4.6     | 4.5  | 0        | 0.4      | 0.6     | 1.0  |
| 남아시아                                                                                        | 6.8        | 6.0      | 6.3     | 6.8  | 2.9      | 4.7      | 5.0     | 4.6  |
| 인도                                                                                          | 7.6        | 6.5      | 6.9     | 7.3  | 2.1      | 4.2      | 4.5     | 4.0  |
| 동남아시아                                                                                       | 4.8        | 4.4      | 4.7     | 4.8  | 2.3      | 2.8      | 3.2     | 2.8  |
| 인도네시아                                                                                       | 5.1        | 5.1      | 5.2     | 5.2  | 1.9      | 2.5      | 2.5     | 2.5  |
| 말레이시아                                                                                       | 5.2        | 4.3      | 4.6     | 4.5  | 1.4      | 2.2      | 1.8     | 1.9  |
| 필리핀                                                                                         | 4.4        | 5.3      | 4.4     | 5.5  | 1.7      | 3.0      | 4.0     | 3.5  |
| 태국                                                                                          | 2.4        | 2.1      | 1.8     | 2.0  | △0.1     | 1.2      | 1.3     | 1.0  |
| 베트남                                                                                         | 8.0        | 6.4      | 7.2     | 7.0  | 3.3      | 3.8      | 4.0     | 3.8  |
| 태평양 도서국                                                                                     | 4.2        | 3.4      | 3.4     | 3.2  | 1.7      | 3.4      | 4.2     | 3.5  |

출처: 재정경제부

## 은 시세 뛴자 밀수 기승 “1분기 적발액 2025년 전체 적발액 넘어”

관세청이 최근 급등한 은 가격을 악용한 밀수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고강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탈세와 자금세탁으로 이어지는 불법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 ● 은 국제시세(매매 기준) ●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 은 시세는 2025년 초 트로이온스당 30달러 수준에서 2026년 초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약 232%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관세(3%)와 부가가치세(10%) 회피를 통한 범죄수익이 커지면서 밀수 유인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은 45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전체 적발액을 웃돌았다.

밀수 수법도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은 그레놀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1회 입국할 때마다 20kg씩 반입하는 방식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약 34억원 상당)을 밀수한 일당 9명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 주범은 불법 반출한 외화, 가상자산으로 홍콩에서 은 그레놀을 구입한 뒤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중·노년층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은 그레놀&기념주화 현품 사진 ●



출처: 관세청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도 적발됐다. 중국에서 반입된 특송화물을 세관에는 금속 부품으로 허위신고한 뒤 실제로는 은 액세서리 20만 여점(약 12억원 상당)을 들여온 사례가 확인됐다. 엑스선 검색 및 개장검사를 실시해 은닉된 은 제품을 적발한 세관 수사팀은 해당 밀수업자가 품명을 허위신고하거나 실제 수량·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하는 등 은 제품 수입신고를 회피한 전모를 밝혀냈다.

● 특송화물 은 제품 현품 ●



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은 국제시세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에 대한 개장검사와 정보 분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엑스선 정밀 검색을 확대해 은 밀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연계 유통망까지 수사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 [ 관세청 인사 ]

### ■ 서기관 승진

|              |             |
|--------------|-------------|
| 관세청 대변인실     | 김 익 현 (金益顯) |
| 관세청 운영지원과    | 이 혜 민 (李慧民) |
|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 해 인 (全海印) |
| 관세청 감찰팀      | 조 영 천 (曹泳千) |
|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 김 병 규 (金炳圭) |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정 용 훈 (鄭龍勳) |
| 관세청 심사정책과    | 채 정 균 (蔡政均) |
| 관세청 조사총괄과    | 전 두 한 (全斗漢) |
| 관세청 조사총괄과    | 조 흥 래 (趙興來) |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김 학 수 (金鶴洙) |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김 수 미 (金秀美) |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강 경 아 (姜景雅) |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문 성 환 (文盛煥) |
|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 이 근 영 (李根榮) |

<2026년 4월 10일자>

###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             |
|-------------|-------------|
|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 강 정 수 (姜正秀) |
|-------------|-------------|

<2026년 4월 10일자>

##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금속 함량 제품 전체 중량의 15% 이상 시 관세 대상··· 품목별 부담 엇갈릴 전망**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를 포함한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서 '중량 15% 이상 시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품목별로 관세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

4월 9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이달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4월 6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통관분부터 적용됐다.



AI 생성 이미지

### ■ 함량 기준 폐기··· “전체 가격에 25~50% 과세”

기존에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부분에 50%의 품목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10%의 글로벌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그간 기업들은 제품별로 금속 함량을 산정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구분 없이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품목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제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총중량이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중량을 계산할 때 철강제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HTS(미국 품목분류) 기준으

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포함해 철저히 계산하고 판정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기업의 행정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함량 산정 절차가 사라지면서 신고 과정은 단순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는 만큼 금속 비중이 낮은 제품의 경우 오히려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

| 구분                            | 품목 예시                    | 세율    |     | 비고                                                                                                     |
|-------------------------------|--------------------------|-------|-----|--------------------------------------------------------------------------------------------------------|
|                               |                          | 변경전   | 변경후 |                                                                                                        |
| 거의 전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 50%   | 50% | -                                                                                                      |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제품             |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 함량과세* | 25% | ①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품목관세 제외<br>②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 제외<br>> ①, ②의 경우 글로벌관세 10%만 부과 |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 부분은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은 임시 글로벌관세 10% 부과

## ■ 품목별 영향 '엇갈림'... 가전 완제품 부담 확대

미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관세 부과 대상 및 제외 품목을 HTS 기준으로 새롭게 공지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관세가 유지되며, 냉장고나 에어컨, 변압기 등은 함량가치를 구분할 필요 없이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은 15%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부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4월 6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공급망과 AI 전력망 확충에 필수인 초고압 변압기(10,000kVA 초과), 산업기계·생산설비·부품 등은 2027년까지 15%[232조 관세+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수준의 한시적 관세가 적용된다. 이때 MFN 세율이 15% 이상이면 232조 품목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며, 러시아 등 미국이 '정상 무역관계(NTR)'를 유지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에는 25%가 적용된다.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 금속 함량이 미미한 제품은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해 한국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32조 관세 특성상 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기에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의 50·25·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품목별 영향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분석했다. 초고압 변압기, 산업기계, 화장품 등은 관세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가전제품, 일반 기계, 일부 자동차부품, 전선·케이블 등은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제도 변경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적은 품목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산업기계 등 제조업 필수 인프라에 대한 관세가 경감된 것은 향후 파생제품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정책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업별 함량가치 산식을 마련하고 입증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오히려 관세 부담이 증가할 산업군도 있다. 또한 중량 기준 예외가 도입됐으나 실질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한 수석연구원은 “관세 대상으로 남은 품목은 상대적으로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군으로 중량 기준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 않다. 중량을 기준으로 관세 대상을 구분할 경우 무거운 금속의 물성을 고려하면 면제될 품목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9일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도 유관기관 및 단체 참석자들은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현장에서는 실무 대응에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토론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겪을 우려도 제기됐다.

그간 파생제품의 금속 비함량 부분에는 122조 관세가 적용됐지만,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122조 관세가 232조 관세로 대체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122조에 따른 글로벌관세가 100일간 임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7월 24일 이후에도 미국정부는 122조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범위를 확대해 온 ‘추가절차(Inclusion Process)’가 종료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8월 미 상무부는 1차 추가절차에서만 407개 품목을 추가한 바 있다. 다만 앞으로 미 행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품목을 추가할 권한은 유지돼 향후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관세 관련 1·2차 추가절차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3차 절차가 진행 중으로 해당 품목의 추가절차 결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4월 중 제공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변경된 품목별 적용 여부와 관세율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박주현의  
워싱턴  
통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며 다시금 ‘America First’를 외치고 있다.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은 국제 경제와 통상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현재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로펌 DLA Piper LLP에서 파견 근무 중인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파트너 변호사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기조와 정책 방향을 연재 형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 끝나지 않은 관세 전쟁 IEEPA 관세조치 위법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박 주 현 |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DLA Piper LLP(US), Washington DC Office 파트너 변호사

미 연방대법원은 2026.2.20. 미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기초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이하 ‘연방대법원 판결’). 뒤이어, 미국 국제무역법원(The United Stat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2026.3.4.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하 ‘CBP’)으로 하여금 IEEPA에 따라 징수된 관세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Order)했다(이하 ‘본건 결정’).

구체적으로 본건 결정은 첫째 아직 확정(Liquidation)되지 않은 수입 건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배제하고 확정(Liquidation)하고, 둘째 이미 확정(Liquidation)된 수입 건 가운데 이의신청(Protest) 기간이 도과되기 전(not final)인 건에 관해서는 IEEPA 관세를 배제하고 재확정(Reliqidation) 절차를 실시할 것을 명했다.

이번 호에서는 본건 결정의 핵심적 효과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 1. 본건 결정의 효과

원칙적으로 IEEPA에 기초한 관세라면<sup>1)</sup>, 그것이 중국·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 또는 전 세계 무역상대국가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부과한 상호관세 전부가 잠재적 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향후 환급 여부는 해당 반입 건(Entry)의 확정(Liquidation)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것이다.

| 항목 유형                           | 정의                                      | CIT 결정 적용 여부   |
|---------------------------------|-----------------------------------------|----------------|
| 미확정 항목                          | CBP가 아직 확정하지 않은 항목<br>(통상 반입 후 314일 이내) | 적용: 확정 과정에서 환급 |
| 확정 이후 이의제기(Protest)<br>기간 내인 항목 | 확정 이후 이의제기 기간<br>(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항목    | 적용: 재확정 및 환급   |
| 이의제기 기간 도과 항목                   | 이의제기 기간 180일이 경과하고<br>이의제기가 없었던 항목      | 미포함: 향후 소송 필요  |

본건 결정의 가장 주목할 점은 CIT가 관세에 관한 분쟁에 있어 단독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임을 언급하면서 CBP에 IEEPA 관세를 부과받은 모든 수입자에게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세를 환급하라는 주문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아직 CIT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많은 수입자에게까지 본건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며 무효인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위 ‘보편적 구제(Universal Relief)’가 허용되는지를 두고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다. 연방대법원의 Trump v. CASA 선례에서는 보편적 금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정부 측은 이 논리를 원용해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DOJ)는 결정 선고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CIT의 리처드 이튼(Richard K. Eaton) 판사는 이를 즉시 기각했다. 다만, 정부는 항소한 뒤 CAFC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이로 인해 실제 환급 개시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된다.

## 2.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

관세 환급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계약서상 무역거래 조건이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당사자가 납부하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IEEPA를 기초로 한 관세부담을 당사자 간 거래가격 조정을 통해 분담하기도 한다. 특히,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절차를 거쳤을 것이므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CIT가 확정 전과 후를 불문하고 IEEPA를 기초로 한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연방대법원

1) 이번 대법원 판결 및 CIT 결정은 IEEPA를 법적 근거로 한 관세에만 적용된다. 과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에 대한 품목관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판결로 인한 관세 환급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다.

### 1) ACH 환급계좌 개설

수입통관 과정에서 CBP에 관세 등 세금, 수수료 기타 비용을 과오납한 납세자가 2026.2.6. 이후로 CBP로부터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자이체(ACH, Auto Clearing House) 환급계좌를 등록해야만 한다. IEEPA를 기초로 한 관세를 납부했다면 CIT 판결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모든 수입자는 CBP의 통관시스템 ACE Portal을 통해 ACH 환급 절차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신속히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계좌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대상 수입 건 식별(Scoping) 및 관련 서류 정비

CBP의 ACE 포털에서 수입(Entry) 기록을 다운로드해, IEEPA 관세가 적용된 수입 건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각 수입 건별로 수입번호, 수입 일자, HTS 코드, 납부 관세액(IEEPA 관세 구분), 원산지, 확정 예정일·완료일 기록을 보존하고,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CF-7501(통관명세서) 반입 요약서 등 전체 수입 서류 일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입신고를 한 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위 서류를 용이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3) 수입신고 확정 상태 확인 및 구분 관리

통상 CBP는 수입신고 후 314일이 지나면 수입신고한 내역을 확정(liquidation)처리한다. 다만, 확정 시점은 법원 명령 또는 행정상 유예가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는바, 본건 연방대법원 판결 전후로, CBP가 '수입신고일 314일 이후 확정'이라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달리 확정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한 물품이 수입신고 후 확정됐는지 확인해 보고, 그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미확정 건(Unliquidated)은 본건 연방대법원 판결, 본건 결정의 결과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PSC(Post Summary Correction)<sup>2)</sup>를 통해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확정해 달라고 신청한다.

둘째, 확정 건(Liquidated)은 확정일 후 180일 이내에 본건 연방대법원 판결과 본건 결정의 취지대로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재확정(Reliquidation)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Protest)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CIT에 소를 제기한다. 이의신청 제기 시 신속처리 요청(Accelerated Disposition)을 할지 여부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sup>3)</sup>

2) 통관일로부터 300일 이내 또는 확정일 15일 이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방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PSC 절차를 활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상 특례를 줄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향후 CBP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이의신청 제기 후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CIT에 소를 제기하는 등 후속 불복절차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관세

#### 4) CBP 규정준수 강화 대비

본건 연방대법원 판결과 본건 결정에 따라 CBP가 대규모 환급 요구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CBP는 확정 또는 재확정 과정에서 환급을 지연시키거나, 환급금액을 줄이기 위해 법률상 부여된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CBP가 (재)확정[(re)liquidation] 절차에서 수입한 물품들의 특성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조사 및 감사(Focused Assessment) 등 권한을 행사해, ① 실질적 변형이 이뤄진 곳을 찾아 원산지를 달리 판정하거나, ② 수입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잘못 신고된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더 많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평가받게 된 결과, 예상보다 적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고했던 물품의 품목분류(Classification), 원산지, 과세가격(Valuation) 등을 자체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가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 5) 전략적 시기 조율

산업통상부 및 유관협회의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 한·미 통상협정 현황, IEPPA에 기초한 관세를 먼저 부과받는 등의 사유로 이미 불복절차에 돌입한 다른 수입자들의 불복 진행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체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의 위험, 무역법 301조에 기초한 조사 내지 미국 현지 사업체의 사업환경 등에 미칠 영향 등 위험 요소와 환급신청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신청을 제기할지 여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기,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속처리 요청을 할지 여부,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 등 후속 불복절차에 나아갈지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 6) 계약서 검토

무역거래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관세를 제품 가격에 전가(Passthrough)하거나 관세 연동 가격할증(Tariff Surcharge) 조항을 설정한 계약의 경우 환급금 배분 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설령 그러한 배분 또는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CBP의 조사나 감사 과정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 조력할 의무, 필요한 불복절차를 제기하거나 제기하는 데 협조할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혹은 관련 서신을 검토해 보고 거래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협조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급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신속처리 요청(Accelerated Disposition)이다. CBP는 신속처리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30일이 되는 날에 그 요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돼, 수입자는 CIT에 불복기한 내에 제소를 하는 등 다음 단계의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대규모 환급액이 예상되는 품목의 경우, CBP의 자의적인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 처리 요청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CIT 소송 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고액의 현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므로, CBP가 자발적으로 환급 결정을 할 가능성, 환급 예상액과 소송 비용을 비교해 그 실익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한·미 FTA] 제3국에서 보관 후 수입된 제품의 직접운송 관련 문의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 1. 질문 & 답변

| 협정명 | 한·미 FTA                                                                                                                                                                               |
|-----|---------------------------------------------------------------------------------------------------------------------------------------------------------------------------------------|
| 질문  | 미국에서 선적한 원산지 물품을 싱가포르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답변  |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직접운송 입증서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해당 서류로 ① 전체 운송경로, 비당사국에서의 ② 비조작 및 ③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2. FTA 직접운송원칙

####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FTA를 적용하기 위해 ① 거래당사자 요건, ② 품목 요건, ③ 원산지 상품 요건, ④ 절차 요건, ⑤ 운송 요건 전체를 충족해야 한다. 그 중 운송 요건(직접운송원칙)은 실제 물품의 원산지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다. 직접운송원칙은 FTA를 적용하기 위해 국제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제3국을 거치지 않고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 운송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 2)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송된 상품이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FTA를 체결하며 양 당사국의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운송원칙이 도입됐다.

쉽게 설명하면 협정당사국 외 다른 국가를 거치면 안된다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더 중요하다. 원칙대로만 한다면 다른 국가를 경유하거나 환적이 이뤄지는 물품들은 FTA를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규정상 예외적으로 경유나 환적이 이뤄져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단이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실제 물류 실무상 환적이나 경유는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 직접운송원칙의 일반적인 내용만 인정된다면 원산지가 한국산인데도 불구하고 FTA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물품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물류 환경상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또는 환적에 대해 인정해주자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내용으로 인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① 경유·환적국 내에서의 작업 범위 안에서, ② 세관의 통제하에 경유·환적이 이뤄지고, ③ 기타 다른 추가 충족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이 이뤄진 것으로 봐 FTA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원산지 검증의 초점이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에 맞춰진 것과 다르게 직접운송의 경우 실제 물품의 운송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 됐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수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운송원칙은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주형, 유럽형으로 나뉘서 설명한다.

미주형은 ‘직접운송 될 것’을 규정해 놓지 않고 통과나 환적을 하는 경우 비당사국에서 추가 공정(가공)을 수행하거나 해당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에 있지 않다면 FTA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경우다. 간접적으로 직접운송 내용을 규정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유럽형은 ‘직접운송 될 것’을 명시한 협정을 말한다. 그 대신 일정 조건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예외를 뒤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해도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겠다”는 예외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에도 직접운송에 관한 일반규정이 존재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는 직접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결국 각 협정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미 FTA의 경우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서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을 공지한 바 있는데, 원칙적으로 직접운송 요건 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되, 예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전체 운송경로, 세관통제, 비조작 여부 등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증서류를 요구할 때는 제3국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으로 물품 조작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해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제3국 단순 경유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물품의 조작 위험이 없는 경우(제3국 경유 전후에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한·미 FTA의 경우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단일 또는 복수(결합)운송서류로서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세관통제에 관한 입증서류로는 세관의 비조작증명서, 재수출증명서, 보세구역반출입증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직접운송에 관한 입증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구분 | 유형      | 예시                                                                                                                    |
|----|---------|-----------------------------------------------------------------------------------------------------------------------|
| 1  | 전체 운송경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과)선하증권</li> <li>- 항공운송장</li> <li>- 육상운송증</li> <li>- 복합(결합) 운송서류</li> </ul> |
| 2  | 세관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발행 비조작증명서</li> <li>- 세관발행 재수출확인증</li> </ul>                                |
| 3  | 비조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발행 보세구역 반출입확인증</li> <li>- 기타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

### 3. 질문 & 답변의 해석

####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미국에서 선적한 원산지 물품을 싱가포르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하고 있다.

한·미 FTA는 직접운송이 돼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는 경우 하역·재선적·상품 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외의 공정을 수행할 수는 없고,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최종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2) 한·미 FTA 통과 및 환적 규정

한·미 FTA 제6.13조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한·미 FTA 제6.13조(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한·미 FTA에서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preserve the good in good condition)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존에 대한 기간 자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질문에서 제시한 상황을 먼저 확인하면,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미국산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보관하다가 국내로 수입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제3국에서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떤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제3국에서의 허용되는 작업의 범위 및 세관통제요건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의 예시를 따로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령 및 고시에 따른 규정을 안내하며, ① 전체 운송경로, 비당사국에서의 ② 비조작 및 ③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 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한·미 FTA 직접운송 사례 몇 가지를 검토해본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수출자) → 홍콩(중개인) → 한국(수입자)의 거래 단계를 거치며, 운송은 미국(출항) → 중국(보세구역장치) → 한국(입항)의 형태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중국 심천세관의 반출입서류 사본 등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반출입서류(원본), 수출국인 미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운송서류(선하증권)에 의해 미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생산 및 제조) → 캐나다 → 한국으로 운송이 이뤄진 건으로 수출국(미국)에서 경유국(캐나다)을 통과할 때 A8A Form이 발급됐다. 민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A8A Form은 캐나다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보세상태로 운송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자와 운송인이 작성해 캐나다 세관에 제출한다. 관세청에서는 해당 서류(A8A)가 수출국(미국)에서 경유국(캐나다)을 통과할 때 보세운송 됐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경우, 해당 서류와 원산지증명서 및 경유국(캐나다)과 우리나라와의 선하증권,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로 수출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세 번째 사례는 보세창고도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에 따른 한·미 FTA 적용에 관한 문의다. 미국 거래처에서 중국으로 수출했으나 중국 보세창고에서 3개월간 통관을 못하고 있는 물품을 환적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상품을 수출 당시 수출계약국에서 수입계약국을 최종목적지로

발송할 필요는 없고, 제3국 보세창고에 장치했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때 계약해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비당사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금지하는 한·EU FTA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한·ASEAN FTA 등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미 FTA에서는 직접운송규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미주형 형태이고, 제3국에서의 허용 가능한 작업 범위 및 세관통제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미 FTA의 통과 및 환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제3국에서의 작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사례는 폐수처리장치 제어반(미국 생산)을 독일로 수출해 독일에서 제어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다. 해당 사안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최종 공정은 계약상대국에서 이뤄져야 하며, 비당사국에서 제어반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고 안내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제조된 낱알 상태의 연질캡슐을 벌크 상태로 베트남에 선적 후 베트남에서 소분 및 개별 포장작업 후 국내로 수입된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다. 결국 제3국에서의 추가 작업(소분 및 개별포장)이 이뤄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낱알 상태의 연질캡슐을 베트남에서 소분 및 개별 포장하는 경우는 한·미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했다.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공정에 대한 의미는 아주 좁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서는 물품을 수입국으로 운송하거나 물품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작업(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USMCA country or to preserve the good in good condition)에 대한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예시는 (i) 검사(inspection), (ii) 운송 중 발생한 먼지 제거(removal of dust that accumulates during shipment), (iii) 환기(ventilation), (iv) 펼침 또는 건조(spreading out or drying), (v) 냉각(chilling), (vi) 소금, 이산화황 또는 기타 수용액 교체(replacing salt, sulphur dioxide or other aqueous solutions), (vii) 손상된 포장재 및 컨테이너 교체(replacing damaged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그리고 부패하거나 손상돼 나머지 물품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 단위 제거(removal of units of the good that are spoiled or damaged and present

a danger to the remaining units of the good)다. 다만, 이에 관한 규정은 한·미 FTA에 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환적 및 경유와 관련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판정(Ruling)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 HQ H250505(2014.5.30.)에서는 인도와 대한민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이 각각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와 한·미 자유무역협정(UKFTA)하에서 특혜대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는데, 인도와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이 중국 내 자유무역지대(FTZ, Free Trade Zone)에 일시 보관(temporary storage)된 뒤 미국으로 유통되는 경우, GSP 및 UKFTA상 특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FTZ 운영업체 단자스(Danzas) AEI Logistics (Shanghai) Co. Ltd.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해당 서신에 따르면, 와이가오 차오(Wai Gao Qiao) FTZ는 중국 세관의 감독하에 운용되며, FTZ로 반입되는 상품은 통관상 중국의 상업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CBP는 해당 물품이 한·미 FTA상 원산지 상품임을 가정한다면, 중국 내 보관활동(warehousing)이 유일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한국 외에서 이뤄진 유일한 활동은 화물 통합에 따른 일시 보관(temporary storage in a consolidation warehouse)이며, 제출된 Danzas AEI Logistics의 정보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중국 세관의 감독하에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Ruling에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추가 자료(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입출고기록, 통관서류 등)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특혜관세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추가로 NY N291654(2018.6.8.) 사안을 검토한다. 해당 Ruling의 쟁점은 품목분류(방직용 섬유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한·미 FTA 통과 및 환적에 대한 해석이 짧게 소개됐다.

사례에서는 원사와 직물 모두 한국산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완성 직물은 이후 대만의 FTZ로 수출돼 검사(inspection)를 받은 뒤 미국으로 선적되는데, 대만 FTZ에서의 환적 및 검사 작업은 한·미 FTA 목적상 통과 및 환적 규정을 위반하는 절차로 판단됐다. 앞서 언급한 USMCA에서는 검사(inspection) 물품을 수입국으로 운송하거나 물품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작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한·미 FTA에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비당사국에서의 검사 등의 절차가 수행되는 것을 통과 및 환적 규정의 위반으로 해석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제3국에서의 추가적인 가공으로 인해 한·미 FTA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를 더 알아보겠다. NY N274233(2016.4.15.)에서는 한국산 볼펜, 펠트팁 마커(사인펜과 같은 물품), 볼펜 리필 및 지우개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가능성을 문의했다.

신청인은 한국에서 멕시코로 볼펜, 펠트팁 마커, 볼펜 리필 및 지우개를 벌크(bulk) 형태로

수입한 후, 멕시코에서 소매 포장(packaged in retail packaging)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계획하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에서 멕시코로 볼펜, 펄트팁 마커, 볼펜 리필 및 지우개를 벌크 선적해 멕시코에서 보세상태로 반입한 뒤 멕시코에서 물품들을 소매 포장한 후, 미국으로 수입통관(소비용 수입)하거나 미국 내 대외자유무역지대(FTZ, Foreign Trade Zone)로 반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에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샌페드로, 롱비치 등의 항구를 통해 선적한 후, 미국 영토를 경유해 멕시코로 보세운송 방식으로 반출하고, 멕시코에서 동일하게 소매 포장이 이뤄진 뒤 다시 미국으로 소비용 수입 또는 FTZ에 반입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CBP에서는 제시된 두 가지 시나리오, 즉 한국산 볼펜, 펄트팁 마커, 볼펜 리필 및 지우개의 벌크 선적분을 멕시코에서 소매 포장하는 경우는, 한·미 FTA상 인정되는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의 보존·운송을 위한 필수 공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관세당국이 포장 행위만으로는 가치의 증대나 제조공정상의 '개선(advancement)'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제9801.00.10호(해외에서 어떠한 제조공정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관한 사항이며, 본건의 벌크 선적물품에는 미국산 원산지 상품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본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한·미 FTA의 통과 및 환적은 직접운송의 예외적 상황을 충족하기 위한 2가지 내용(작업의 범위, 세관통제)만 규정돼 있으나,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케이스(시나리오)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3국에서의 보관 등의 행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가공(검사, 소분포장, 소프트웨어 입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직접운송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운송서류, 비가공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를 확보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상 직접운송 충족 여부에 관련한 의문사항은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수출입통관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 면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종이 쇼핑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쇼핑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돼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예: Bottle made in ‘국명’).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8호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하며, 제2조 제7호에 따라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7.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8.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참고로, 1회용 포장용기의 실수요자란, 수요의 주된 목적이 1회용 포장용기의 판매가 아니라 특정 물품의 포장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회용 포장용기를 제품의 포장 용도로 수입하는 자는 실 수요자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인 종이 쇼핑백이 이러한 규정에 따른 1회용 포장용기에 해당되며, 수입하는 주체가 실수요자인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수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해외 직구한 물품이 배송되는 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았습니다.  
통관이 지연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에서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은 시점부터 재발급 이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관 전에 재발급받았다면 해당 운송(특송)업체 측에 변경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특송업체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우측 상단 화물진행정보 > M B/L-H B/L 체크' 후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화물진행정보 및 특송업체명과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입항 후 조회 가능한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수입요건 / 호신용 경보기

**HSK 제8531.80-9000호에 분류되는 호신용 경보기의 수입요건을 알려주세요.**

HSK 제8531.80-9000호에 분류되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로 '기타 도어벨·차임·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 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다기능 기계의 주된 기능 판정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효력 범위 등에 관한 판례

허지원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 1. 들어가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복합기계와 다기능기계에 대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HS 해설서는 위 주 제3호와 관련해,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품들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품의 다기능 중 어떤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 살펴볼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3.19. 선고 2024누65456 판결<sup>1)</sup>)는 사운드바(Sound Bar)와 같이 음향신호를 증폭·출력하는 기능과 음원파일을 음향신호로 변환·재생하는 기능이 결합된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과 사전심사의 효력을 다룬 사안이다.

사안에서는 ① 해당 물품의 주된 기능을 확성기(제8518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음성 재생기(제8519호)로 볼 것인지, ② 과거 별개 모델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본건 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③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졌다.

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제품의 외형, 구성, 기능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해 주된 기능을 판단해야 하며, 특정 모델에 한정된 사전심사의 효력은 모델명이 다른 유사 물품에까지 확장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6.9.부터 2019.4.15.까지 중국에 있는 수출자로부터 다수의 사운드바(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를 제8518.22-0000호(한·중 FTA 관세율 4.8~6.4%)로 수입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수리했다.

1)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두33501(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나. 원고는 2020.1.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519.81-2900호(한·중 FTA 관세율 0%)<sup>2)</sup>의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이하 ‘음성 재생기기’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품목번호 오신고로 인해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2020.3.9. 이를 거부했다.

다. 원고는 2021.3.12. 피고에게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2021.4.15.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4.2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22.2.8. 재조사 결정을 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에 2022.6.28.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9.27. 기각됐다.

### 3.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물품은 음성 재생기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519호로 분류돼야 한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물품이 확성기로서 HSK 제8518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 관세분류평가원은 2013.4.9. 이미 이 사건 각 물품과 동일 종류인 사운드바를 HSK 제8519.81-2900호로 분류하는 사전심사를 했으므로, 이 사건 각 물품도 「관세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위 사전심사 통지 내용에 따라 HSK 제8519.81-2900호로 품목분류를 해야 하고(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위 사전심사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각 물품 또한 HS 제8519호로 분류될 것으로 신뢰했고, 이러한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 나. 「관세법」 별표, HS 해설서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대한민국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제정한 관세 등에 통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협약의 체약국으로서 HS협약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2) 2021.12.9.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HSK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에 수용해 적용하고 있다. HS협약 제3조에 따라 체약국은 6단위 부호(소호)까지는 자국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를 HS협약 체계와 일치시켜야 하므로, 대한민국은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6단위 부호(소호)까지를 HS협약에 따라 편성하고 있고, 다만 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하위 분류 4단위 부호를 추가해 총 10단위 부호로 세분한 HSK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sup>3)</sup> 또한 대한민국은 WCO가 승인한 HS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 해설서인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등에 따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과 [별표 2]로 수용해 왔다.

2) HSK의 제8518.22-0000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품목번호 |          | 품명                                                                                                                               |
|------|----------|----------------------------------------------------------------------------------------------------------------------------------|
| 호    | 소호       |                                                                                                                                  |
| 8518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 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
|      | 2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2 00 00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3) HSK의 제8519.81-2900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품목번호 |       | 품명                             |
|------|-------|--------------------------------|
| 호    | 소호    |                                |
| 8519 |       |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
|      | 8     | 그 밖의 기기                        |
|      | 81    |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
|      | 29 00 | 기타                             |

4)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이하 ‘HS 해설서’라 한다)는 제16부, 제85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 고시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별표]로 수용됐다.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총설

... <중략> ...

(VI)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와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부의 주 제3호)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제8458호부터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 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조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

## ■ 제8519호 해설서

85.19 -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8519.3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 그 밖의 기기

8519.81 --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8519.89 -- 기타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광학 매체·반도체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한다.

음성 기록기기(sound recording apparatus)는 음성 재생기기가 원래의 음파(말소리, 음악 등)를 재생할 수 있도록 기록 매체를 수정한다.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나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에서 다운로드 받아 디지털 오디오 장치(예: MP3 플레이어)의 내부메모리(예: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 사운드 파일의 녹음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 음성을 디지털 코드로 녹음하는 장치는 녹음된 디지털 코드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기능이 없으면 음성을 재생할 수 없다.

... <중략> ...

(IV) 자기(磁氣)식·광학식이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이 그룹에 속하는 기기들은 휴대용일 수도 있다. 음향 장치(확성기·이어폰·헤드폰)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

5)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이에 관련되는 부·류의 주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1998.5.8. 선고 98두1949 판결 등 참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해야 하고, 관세율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는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3.26.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물품의 품명을 ‘SOUND BAR’, 모델을 ‘A’, 규격을 ‘B’ 등으로 각 특정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이하 위 신청물품을 ‘선행 심사물품’이라 한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4.9. 위 신청에 따라 선행 심사물품에 관해 품명, 모델, 규격 등 특정해 HSK 제8519.81-2900호로 분류하는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했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1.10.19. 원고에게 선행 심사물품에 관해 품목분류를 HSK 제 8518.22-0000호로 변경하는 통지를 했다.

4) 선행 심사물품과 이 사건 각 물품의 외형, 외부입력 단자 등은 다음과 같다.

#### 라. 구체적 판단

#####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물품의 주된 기능은 외부입력 단자를 통해 외부 음원으로부터 음향신호를 받아 증폭·출력하는 것이고, USB 단자에 접속된 USB 저장매체에 저장된 MP3 등 음원파일을 읽어 음향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은 보조적 기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물품은 HSK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이러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sup>4)</sup>인 복합형 확성기[Multiple loudspeaker, 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물품은 HSK 제8518.29-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물품은 동일한 인클로저에 2개 이상의 확성기(speaker)가 장착된 본체와 본체의 저음을 보강하기 위한 우퍼로 구성된 기기다(다만, 모델 C의 경우 본체만으로 구성된다).

나) 이 사건 각 물품은 USB, 블루투스, AUX, OPTICAL, HDMI<sup>5)</sup> 등의 외부입력단자를 통해 외부 음원기기에서 입력된 음향신호 등을 증폭해 확성기를 통해 출력한다.

다) 이 사건 각 물품을 포함한 사운드바 유형의 제품은 TV 등 영상기기의 음향 성능 보강을 위해 개발됐고, 대부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이러한 용도를 이 사건 각 물품의 주된 용도로 홍보해 왔고, 이 사건 각 물품의 사용설명서도 주로 이러한 용도에 이 사건 각 물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물품은, 위 외부입력단자 중 USB 단자에 USB 저장매체를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저장매체에 기록된 MP3 등 음원파일을 읽을 수 있어 음원파일을 바로 증폭·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USB 단자는 펌웨어(firmware) 업데이트를 통해 이 사건 각 물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원고의 홈페이지(samsung.com/sec)에서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USB 저장매체를 위 USB 단자에 접속하면, 이 사건 각 물품이 위 소프트웨어를 읽어 실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위 USB 단자는 음원재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음원파일 재생기능이 없음에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USB 단자가 있는 전자기기들이 드물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위 음원파일 재생기능은 위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음원파일 재생기능을 이 사건 각 물품의 주된 기능으로 홍보 또는 설명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바)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sup>6)</sup>]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4) 주 제5호에 따라 ‘기계’에는 제16부에 속하는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가 포함되므로, 전자기기도 ‘기계’로 표현된다.

5) 모델 C, D의 경우 HDMI 단자가 없다.

6)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는 HS 해설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를 구분하고 있다. HS 해설서는 주 제3호와 관련해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물품의 외형, 구성, 규격, 기능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각 물품은 주된 기능인 외부 음원 확성 기능과 부수적 기능인 USB 재생 기능은 각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별도의 기계들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갖춘 기계가 독립적인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기능의 기계에 해당하고,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계나 장치들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제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물품은 선행 심사물품과 같지 않아 구 「관세법」(2023.12.31. 법률 제1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관세법」상 사전심사 통지제도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규모로 수입되는 물품 등과 관련해 견본물품<sup>7)</sup> 등을 제출해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받음으로써 추후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과 같은 ‘특정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할 때 해당 ‘특정물품’이 다르게 품목분류 돼 예상치 못한 액수의 관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구 「관세법」 제86조 제4항은 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품목분류된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sup>8)</sup>,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에는 품명, 모델, 규격, 원산지, 물품설명 등으로 신청물품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설명서(위 서식 을지)에서는 품명에 모델, 규격 등을 포함해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전심사 신청물품은 품명, 모델, 규격, 원산지 등으로 특정된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7)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물품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본문 단서 참조).

8) 이 사건 품목분류의 경우, 「관세법」 제8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고시 또는 공표되지 않았다.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7.5. 선고 2012두3972 판결, 대법원 2024.5.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등 참조).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특정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만 그 통지 내용에 따른 품목분류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구 「관세법」 제86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품명, 모델, 규격 등을 특정해 사전심사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품명, 모델, 규격 등을 특정해 품목분류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품목분류 결정 통지된 특정물품과 ‘같은 때’의 의미는 위 품목분류 결정 통지된 특정물품과 ‘품명, 모델, 규격 등이 같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전심사와 관련해서 원고는 선행 심사물품의 품명을 ‘SOUND BAR’, 모델을 ‘A’, 규격을 ‘B’로 각 특정해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위와 동일하게 품명, 모델, 규격 등을 특정해 사전심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한 모델명이 ‘A’인 수입물품에 관해 이 사건 변경 통지 전까지 이 사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모두 HSK 제8519호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각 물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심사물품과 모델명이 모두 상이할 뿐 아니라 크기, 무게 등 규격도 다르다.

사) 구 「관세법」 제86조는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사전심사해 품목분류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사운드바(모델명 A)에 대한 사전심사 통지 신청을 해 회신을 받을 당시 시행됐던 구 「관세법」(2014.12.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본문에서 “관세청장은 동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15.2.6. 대통령령 제2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은 위 단서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사운드바(모델명 A)에 대해 2013.3.26. 사전심사 통지를 신청하면서 품목분류 결과 비공개 신청을 했고(을 제11호증 참조), 위 신청에 대해 2013.4.9.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는 바, 위 사전심사에 따른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위 통지일로부터 1년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사전심사 통지 신청에 따른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2016.6.9.부터 2019.4.15.까지의 기간에 수입된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시 이미 도과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물품에 구 「관세법」 제86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한편, 원고는 대법원이 밀수출입죄에 관한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의 의미를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라고 보면서 그 동일성 인정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고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들어(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구 「관세법」 제86조 제5항의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의 물품의 동일성 여부도 위와 마찬가지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관한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규정과 관세 부과 전제가 되는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구 「관세법」 제86조 제5항은 “규율 목적 및 대상이 상이해 반드시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의 ‘다른 물품’과 구 「관세법」 제86조 제5항의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의 판단기준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관련 법리의 내용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관세법령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해 보면, 구 「관세법」 제86조 제5항의 품목분류 결정 통지된 특정물품과 ‘같을 때’의 의미는 품목분류 결정 통지된 특정물품과 ‘품명, 모델, 규격 등이 같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③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전심사는 품명을 ‘SOUND BAR’, 모델을 ‘A’, 규격을 ‘B’로 각 특정한 선행 심사물품에 관한 것으로, 구 「관세법」 제8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고시 또는 공표되지도 않았는바, 품명이 ‘SOUND BAR’인 물품 일반에 관한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피고의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갑 제4호증에는 선행 심사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해 이 사건 사전심사에 따른 품목번호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전심사 회신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회신을 신뢰했고, 그러한 신뢰에 기초해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전심사 회신 이후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의 각 물품을 HSK 제8519호가 아닌 제8518호로 수입신고했고, 그에 대한 피고의 수리가 모두 마쳐진 이후에야 이 사건 각 물품이 제851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행정청구를 제기했을 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전심사 회신을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전심사가 이 사건 각 물품을 포함한 ‘SOUND BAR’ 일반에 관한 견해표명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어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물품이 USB 단자를 통해 음원 파일을 읽어 음향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는 음향신호를 증폭해 출력하는 기능에 대한 보조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8518호의 복합형 확성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의 특성, 개발 목적, 홍보 방식, 사용설명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용도를 통해 해당 물품의 주된 기능을 확인했다. 또한, 물품의 외형, 구성, 규격, 기능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물품은 다기능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관세법」 제86조 제5항의 ‘같은 물품’의 의미를 품명·모델·규격 등이 동일한 물품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특정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효력을 모델명과 규격이 다른 물품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가 유사 물품 일반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없으며, 원고가 본건 물품들을 수년간 제8518호로 자진해 수입신고 해 온 사실에 비춰 볼 때 기존 사전심사 결과를 신뢰해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부정했다.

결국 이 판결은 **다기능 기계의 품목분류 시 객관적인 용도를 우선해 주된 기능을 판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사전심사의 효력범위를 같은 물품으로 제한함으로써, 모델명이 다른 유사물품에 대해 기존 심사 결과를 원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한 사례라 할 것이다.**

## 화학적으로 단일한 안료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안료(Pigment)는 물체에 색을 입힐 때 사용하는 착색제로 천을 물들이는 염료(Dye)와 달리 물이나 기름, 용제 등에 녹지 않는 물질이다. 염료보다 내화학성이 좋고, 자외선이나 열, 온도, 습도 등에 견디는 내광성, 내열성, 내후성이 뛰어나다.

광물을 원료로 하는 무기안료는 가격이 저렴하고 빛과 열에 견디는 내구성이 뛰어나 바탕을 가리는 은폐력이 좋지만, 색상이 다소 탁하며 중금속 독성 문제가 있다. 반면 탄소 화합물로 만든 유기안료는 색상이 선명하고 다양하며 독성 문제도 무기안료보다 대체로 안전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빛이나 열에 의해 색이 변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품목분류에서 안료는 통상적으로 제32류에 분류되지만 화학적 순도, 표면처리 여부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황갈색 분말상의 아연철황색(Zinc Ferrite yellow)으로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에 해당하는 제3206.49-9000호로 신고했다.

아연철황색의 국제 안료 색인번호(Color Index Name)는 ‘Pigment yellow 119’이며 복합

금속 산화물 무기안료의 한 종류다. 일반적으로 내열성, 내광성,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이 뛰어나 코팅, 마감재, 광범위한 고온 응용 분야에 이상적인 안료다.

앞서 설명했듯이 안료로 사용되더라도 제32류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제32류 주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제32류 주 제1호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제3203호·제3204호의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 실리카 유리,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는 제외한다]

#### ■ 제32류 총설

<전략> …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의 착색제,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제품(페인트·요업용 착색제·잉크 등)도 포함한다. 바니시(vernish)·건조제·퍼티(putty)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밖의 조제품도 포함한다.

제3203호·제3204호에 분류하는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하는 종류의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鎔融 : fused) 석영유리·그 밖의 용융(鎔融 : fused) 실리카유리·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된 염료나 그 밖의 착색제(제3212호)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28류나 제29류에 분류한다.

정리하자면, 제32류에는 통상적으로 조제품을 분류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물품일 경우 안료로 사용되더라도 제28류나 제29류로 분류해야 한다.

본 물품은 성분상 아연철황색으로만 이뤄진 화학적으로 단일한 물품에 해당하며 제32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2841호에는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이 분류되며, 제2841.90-4000호에 ‘철산염과 아철산염(Ferrates and ferrites)’을 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산화금속산의 염이나 과산화금속산의 염(무수물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금속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한다. … <중략> … (8) 철산염과 아철산염: 철산염과 아철산염은 각각 수산화제이철[Fe(OH)3]과 수산화제일철[Fe(OH)2]에서 유도한다”라고 예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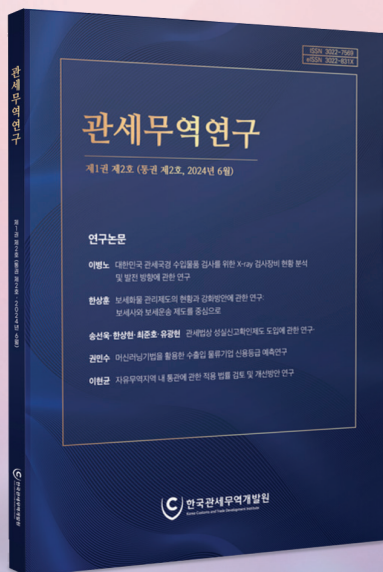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본 물품은 아철산염인 아연철황색(Zinc Ferrite yellow)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41.90-4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 신고품명       | 신고세번(세율)                  | 회보품명          | 정정세번(세율)                  |
|------------|---------------------------|---------------|---------------------------|
| THERMOXIDE | 3206.49-9000<br>(FCN1 0%) | Zinc Ferrites | 2841.90-4000<br>(FCN1 0%) |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